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550-01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서희열 심충진 최천규

2010. 8



사단
법인 한국세무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학회에 의뢰한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진	
책임연구원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구원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최천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모형 및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농·어업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수산 산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확충, 우리 먹거리의 세계화, FTA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갖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어민 중심의 조세지원 제도 보다는 법인 중심의 조세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농어촌발전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어업법인의 재무구조는 아직까지 취약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는 FTA의 확대 등에 대응하면서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관련 법률, 관련 참고문헌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와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관련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외국의 농·어업법인 관련 주요 조세제도를 검토한 후 농수산물에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여섯 가지(녹색성장 지원정책, 세계화 지원정책, FTA 대응 지원정책, 자원개발 및 확보 지원정책, 농수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 지원정책)로 나누어 각 지원정책별로 농·어업법인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법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제도를 모색함으로써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농수산물을 통한 녹색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통해서 농수산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농·어업 분야의 신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계속 확대되고 있는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가격표시제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농수산물의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조세지원정책을 통해서 잉여 농수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농수산물의 유통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종사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조세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내용은 유관 기관에 정책보고서로 건의할 수 있다. 우리 농수산물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 법인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농·어업법인 현황에는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경영상태 및 국내의 식품제조업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는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박문호·전익수 2000),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에 관한 연구(김정호 등 2004),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희열·정규언 2006), 농·어업부문조세감면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이종성 2006),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된 연구(김종면 등 2008), 수산업 기반확충과 관련된 연구(수산경제연

구원 2007) 등이 있다.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제1절 개요

현행 농·어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농·어업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세지원 즉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국세청의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농·어업법인의 법인세 징세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1.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법의 내용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의 규정이 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9조). 농업·어업

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신이 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수산물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소득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특례(동법 제154조 제1항)가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법규정이 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인지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가 있다.

4.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및 제2항), 자영 어민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7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1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2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지방세법 제263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법 제264조),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83조) 규정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6.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농·어민(양축가 포함)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7. 부가가치세(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FTA의 확대 등 대외시장 개방의 압력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산업의 경쟁력 유도를 위한 전체적인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하다고 본다.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본다.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이력 관리에서부터 원천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다른 업종과 융합해서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조세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본다.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보는 안정적인 국민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문제이므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조세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현재 잉여 농산물에 대한 처리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까지 잉여 농산물은 있다. 따라서, 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가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1절 미국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

어류의 포획, 운반을 위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류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장을 찾기 위해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류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유류의 종류는 휘발유(gasoline), 엔진연료(special motor fuels), 응축된 자연 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디젤연료(undyed diesel fuel) 등이 있다.

사업목적에 위하여 사용된 선박이나 보트의 연료에 대한 유류비 세액공제 또는 상환제도가 있다. 농업은 가축, 낙농, 어류, 조류, 과일, 모피, 농장, 과수원, 목장, 비닐하우스, 원예, 양어장 등 사업목적의 농사종류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호주도 농업 및 어업과 관련하여 유류비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2. 감가상각비 특례

어업관련 그물, 주전자, 올라미는 7년간 상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1년 내 비용화 할 수도 있고 그물은 내용연수를 7년 이상으로 상각할 수도 있다. 어업의 경우 미국의 경우보다 상각내용연수가 길어 조기에 해당 자산을 비용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소득세제

농업협동조합이나 면세기관이 지급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제도 및 운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제도가 있다.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농업소득의 평준화제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S corporation의 주주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법인(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S corporation, 부동산(estates), 신탁(trusts)는 이용할 수 없다.¹⁾ 농업소득의 평준화제도는 Form 1040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어업소득은 어획, 양식 등 어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²⁾

제2절 일본

일본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와 달리 누진세율이 아니다. 보통법인의 경우에는 30%이며, 연간 소득이 80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22%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주요 지방세로서 법인사업세가 있는데 이 법인사업세는 기업이 국세인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인사업세의 세율은 과세소득의 9.6%이다. 농지방세법 제2조 제7항 각호의 요

1)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dustries/article/0,,id=99020,00.html> 참조

2) 2009 Instructions for Schedule J 참조

건을 전부 만족하는 농사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세를 비과세한다.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특별공제 제도,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지역의 토지 등의 과세특례 제도,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제도,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제도,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과 관련된 특례제도, 농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제도, 농사조합법인(農事組合法人)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제도가 있다.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청색신고의 특례제도,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제도,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

제3절 영국

영국은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³⁾제도와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매년 4% 상각율)의 규정이 있다.

제4절 프랑스

1. 소득세

프랑스의 농업소득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

3)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pass-money-property/agricultural-relief.htm> 참조

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수입금액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기에 납세협력의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농업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 5년 동안 감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⁴⁾

생명농업(agriculture biologique)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농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동일 소득에서 우선 상계하고 미상계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상계된다.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6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프랑스 내 소재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농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농업종사자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소세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9.6%이다. 그러나, 농업생산품, 어업생산품, 양어장 생산품 및 가금사육장 생산품 중 변형되지 아니한 것, 농업에 이용되는 석회질 비료, 비료, 유황·황산동·황산동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광분 및 최소한 10%의 동이 포함된 구리, 인가된 살충제 또는 농업부장관이 판매를 허가한 살충제는 정상세율보다 낮은 5.50%를 적용하고 있다.

4) 4,000유로부터 26,000유로까지 감면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안창남 p.110을 참조할 것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에 기술되어 있으나, 현행 조세제도에 의하면 원천기술 분야에 농수산 분야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단순한 먹거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농수산물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의학, 소재 등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특성을 DNA분석 기법 등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신 동력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기술되어 있으며,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고부가식품산업이 있다.⁵⁾

신 동력산업에 포함되는 고부가식품산업에는 첫째, 친환경 안심식품으로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을 이용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둘째,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과 관련된 기술 융합기반 기능성식품만 포함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화학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 질병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조세지원 미흡

현실적으로 농어민 개인이나 농·어업협동조합이 원천기술과 신 동력개발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조세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부족하였다. 일부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토의는 있었지만 조세측면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 흡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정부는 6대 전통·발효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을 중심으로 과학화, 산업화하여 한식의 세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수농산물 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제도가 있지만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인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업별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FTA가 실시됨에 따라 농수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업분야와 다른 분야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다.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어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처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FTA 협상을 통한 한국 농·어업 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으며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정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세법에서 별도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항목은 없다. 그러므로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결정을 위한 회계제도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원산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발생원천별로 발생비용을 수집·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FTA에 따른 우리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에게 우리 먹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과 외국의 먹거리 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ISO 22000(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과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관련된 세제지원과 우리 농수산 식품의 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업 및 어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농수산물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어업권 등 농수산 자원의 개발투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현재는 농수산물의 해외 자원 개발 확보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개도국 농업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도국 농업전문가를 국내에서 교육훈련 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외 농수산 식품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잉여 농수산물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 가구의 소득 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먹거리의 자급자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잉여 쌀의 소비를 위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화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의 2/102(음식점업은 3/103)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⁶⁾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과세 대상재화를 구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취득원가

6) 102분의 2는 1.96%, 103분의 3은 2.91%, 106분의 6은 5.66%, 108분의 8은 7.40%의 매입세액공제 효과가 있지만 농·어업 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를 구성함으로써 누적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잉여 농수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제조원가 중 농수산물의 원재료비를 과다하게 차지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국내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등을 거쳐 제품화할 경우 사용되는 설비자산 및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농수산물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의 세법 규정 내에서 특별히 농수산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포함)과 어업법인(어업협동조합, 어촌계 포함)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사이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임대운영사업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또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e세로」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e세로」의 회원가입 절차,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를 보면 노령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 농업·어업법인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 스스로 전자적 접근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위해서 추가인력 및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나 매출액이 적은 농업·어업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녹색성장 확충과 관련된 분야에 포함이 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참조)를 받을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위 확대

원천기술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해당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농·어업 분야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녹색성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를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및 현재의 에너지와 혼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자원 분야

다음과 같은 농·어업 자원을 보존 및 개량화시키는 기술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기능성 품종개발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현재의 생산량 및 효율성이 기존의 품종보다 20%이상 증가될 경우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우리 농산물 중 기초 식량에 해당되는 우수한 쌀, 밀, 잡곡 등의 유전자
- ② 동식물의 우량 유전자, 양식이 가능한 어패류의 유전자

다. 청정기반 분야

다음과 같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충 및 위해 박테리아의 천적을 개발하여 대량사육의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기술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벼농사 등 농사와 관련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 ② 양식업에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분야

현재는 에너지관리와 공급망 관리에 한정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FTA 및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이력관리(입하, 재배, 출하시기 등)가 필수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이력관리와 관련된 RFID 기술도 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는 해당 분야를 열거하고 있지만 농수산자원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많아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전기구동 방식 자동차와 클린 디젤자동차만 신 성장동력 분야에 해당되고 있지만, 다음의 항목도 신 성장동력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농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가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 ② 어선의 엔진에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바이오의약품, 첨단의료기기분야만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어업분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농·어업 자원을 통한 농·어업 자원 자체의 질병치료와 농·어업 자원을 통한 인간의 질병치료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병충해, 동식물·어장에 대한 병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 ②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인간 위해물질에 대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청정석탄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만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기술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 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 ②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 축산 분뇨 등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등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에 친환경안심식품과 기능성 식품만 포함되어 있지만 6대 전통·발효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을 중심으로 한식의 세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발효기술과 염장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맛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암 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 ① 발효기술: 반찬으로 이용될 수 있는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사용되는 발효기술의 개발
- ② 염장기술: 내륙지방에 발달된 염장기술을 이용한 고부가식품 개발
- ③ 친환경식품 기술: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양념을 만들 수 있는 기술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세액감면 확대

농·어업 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동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연구단지에 입주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준용하는 안이다.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의 세액감면 요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의 요건은 비현실적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녀 교육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및 인구의 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우리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미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화를 위한 품질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입맛에 맞는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가. 세제지원 규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우리의 농수산 식품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다만, 투자의 범위에 토지는 제외된다.

나. 세제혜택의 요건

세계화를 위한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가기 때문에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와 해당 농수산 식품의 수출이 일정부분 발생되어야 한다.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우리 농수산식품에 젊은 인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세계화를 위한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구소 설립의 요건 중 전담연구 인력의 구성비를 국내와 국외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담 연구인력 중 50% 이상은 현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당 음식점을 영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특정음식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우리 고유 음식점을 통해서 세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1)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 특히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① 농·어업 분야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② 농·어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투자처 범위의 확대

7)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전문인력) 참조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면 투자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벤처자금의 투자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농수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농림수산물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로부터 벤처창업자금을 출자 받을 경우에도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처의 범위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FTA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에 원산지 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구매, 부착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 지출을 발생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원산지 가격표시 부착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제품(상품)이 판매될 때 비용화되지만 조기에 비용(손금)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사업 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의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설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일체에 대해서도 발생시점에 손금산입 할 필요가 있다.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국내의 종자 및 치어를 개량화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종자 및 치어 등을 해외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화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구원 총수를 10인 이상 요건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몇몇의 전문가가 종자나 치어를 개량하는데 참여해도 제조업과 달리 연구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농수산식품분야를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중 다음의 연구원 총수 10인 이상을 연구원 총수 5인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우리 먹거리(비빔밥, 발효식품, 염장식품, 냉면 등)를 해외 현지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15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를 준용하여 어업권의 확대 및 개발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 확대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⁸⁾의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음식점 업종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음식점 업 이외 업종은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 으로 확대지원 함으로써 국내 잉여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특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의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자산의 비용화가 조기에 가능하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법인사업자이지만 농·어업법인의 경우 영세한 법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납세협력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될 것이다.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영국과 같이 농어민 등이 직접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제7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기술하였다.

<목 차>

<연구 요약>	1
<목 차>	29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목적	39
제2절 연구방법	40
제3절 연구모형	41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1
1. 기대효과	41
2. 활용방안	42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43
제1절 농·어업법인 현황	43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43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44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45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46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47

6.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47
가.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48
나. 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48
7. 경영상태	49
가.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49
나.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50
8. 국내의 식품제조업 현황	51
가.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51
나.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52
다.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53
라.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55
마.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	56
제2절 선행연구	57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62
제1절 개요	62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62
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62
2. 법인세 현황	63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63
1. 법인세법	63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3
나. 법인세 산출세액과 세율	65
2. 소득세법	65

가. 비과세소득	65
나. 사업소득	66
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66
라. 비과세 양도소득	67
마.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67
바. 1세대1주택의 특례	68
3. 조세특례제한법	69
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69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70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72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3
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73
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74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75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77
자.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77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78
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79
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80
파.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80
하. 인지세의 면제	82
가. 증권거래세의 면제	83
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84
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85
4. 지방세법	87
가.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87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90

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90
라.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91
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92
바.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93
사.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93
5. 기타 세법	94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초공제)	94
나.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95
다. 부가가치세(면세)	96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96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96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96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97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97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97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97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98
제1절 미국	98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 ..	98
2. 감가상각비 특례	98
3. 소득세제	99
가. 배당소득의 비과세	99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99
다. 순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	99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100

제2절 일본	100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100
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100
나.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특례	102
다.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103
라.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	106
마.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107
바.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특례	107
사. 농사조합법인(農事組合法人)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110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110
가. 청색신고의 특례	110
나.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11
다.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111
라.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112
마.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114
바.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14
 제3절 영국	 115
1.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115
2.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	115
 제4절 프랑스	 115
1. 소득세	115
2. 보유세	116
3. 사업소세	116
4. 부가가치세	116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118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18

-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18
-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19
-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구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119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0

-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0
-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0
-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121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2

-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2
- 2.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3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3

-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3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4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4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124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125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26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126
가. 전자세금계산서	126
나. 영세한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증대	128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규정 ..	129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130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131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31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위확대	131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131
나. 자원 분야	131
다. 청정기반 분야	132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분야	13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133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133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133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134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134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5
가. 세액감면 확대	135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135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36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6
가. 세제지원 규모	136
나. 세제혜택의 요건	136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36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137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137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137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38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138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138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139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139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139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140
제4절 농수산물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40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140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141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41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141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142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42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142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143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144
<참고문헌>	156
별첨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별표8	158
별첨2: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약표	168

<표 차례>

<표 2-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43
<표 2-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44
<표 2-3> 농·어업법인의 정보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45
<표 2-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46
<표 2-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47
<표 2-6> 농업법인의 종사자현황	48
<표 2-7> 어업법인의 종사자현황	49
<표 2-8>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49
<표 2-9>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50
<표 2-10>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51
<표 2-11>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원재료 구입 현황	52
<표 2-12>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53
<표 2-13>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56
<표 2-14>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2008년 기준) ...	57
<표 2-15> 수산관련 세제개선	60
<표 3-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2
<표 3-2> 농·어업 및 임업법인의 법인세 현황	63
<표 4-1> 농사조합법인의 과세특례 효과	110
<표 4-2> 어선의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산정	113
<표 5-1>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대상 기준금액	12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모형	4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농·어업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WTO 및 FTA가 확대되면서 농수산물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농수산 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특히, 농·어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저 출산 등의 문제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89년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업규모 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어업법인을 허용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에 시행령의 공포로 농·어업법인 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 인하여 농·어업분야는 기업적 농·어업법인을 발전육성시킴으로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기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3,075개 농업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법인 당 연간 매출이 18억900만원으로 4.7%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28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39.3% 증가하였지만, 결손법인에 있어서는 750개에서 897개로 19.6% 늘면서 전체 결산법인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53개 어업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당 연간 매출은 10억7300만원으로 1년새 15.0%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1.1% 감소했다.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34.50원, 당기순이익은 22.40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8.40원과 6.50원씩 줄었다.

정부가 농어촌발전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농·어업법인의 재무구조는 아직까지 취약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2008년도 기준으로 농업법인의 평균 자산과 부채는 각각 14억5500만원, 9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2.9% 감소했고, 평균 자본도 5억3000만원으로 5.3%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93.3%로 1년 새 4.8%포인트 높아

졌다. 또한 어업법인 역시 어업 법인당 평균 자산은 10억4100만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부채는 7억3600만원으로 8.2% 증가했다. 자본은 14.1% 감소한 3억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41.3%로 전년보다 49.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므로 농·어업 법인에 대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통하여 자본·기술집약적인 경쟁력이 있는 농·어업법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수산 산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확충, 우리 먹거리의 세계화, FTA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갖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어민 중심의 조세지원 제도 보다는 법인 중심의 조세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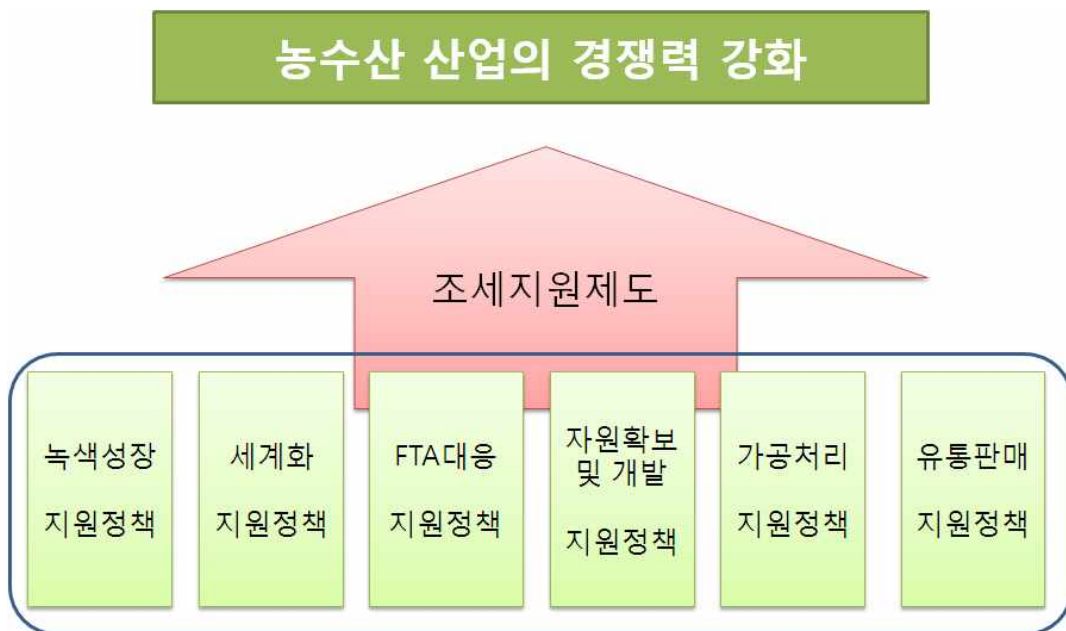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FTA의 확대 등에 대응하면서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지원정책, 세계화 지원정책, FTA 대응 지원정책, 자원개발 및 확보 지원정책, 농수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 지원 정책적 측면을 농·어업법인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법률, 관련 참고문헌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와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관련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외국의 농·어업법인 관련 주요 조세제도를 검토한 후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6가지(녹색성장 지원정책, 세계화 지원정책, FTA 대응 지원정책, 자원개발 및 확보 지원정책, 농수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 지원정책)로 나누어 각 지원정책별로 농·어업법인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제3절 연구모형

정부는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녹색성장 지원정책, 세계화 지원정책, FTA 대응 지원정책, 자원 확보 및 개발 지원정책, 가공처리 지원정책 및 유통판매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각종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농·어업 법인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 모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법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제도를 모색함으로써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둘째, 농수산물을 통한 녹색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통해서 농수산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농·어업 분야의 신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계속 확대되고 있는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가격표시제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다섯째, 농수산물의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조세지원정책을 통해서 잉여 농수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농수산물의 유통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종사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2.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조세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내용은 유관 기관에 정책보고서로 건의할 수 있다. 우리 농수산물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 법인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농·어업법인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농·어업법인 현황

농·어업법인의 설치근거법령을 토대로 제도의 취지 등을 고찰하고, 현행 농·어업법인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농·어업법인의 재무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다음은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체수와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말 기준 전체 농업법인의 총 사업체수는 6,306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어업법인 역시 2008년 말 기준 사업체수가 629개로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6,003개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조합법인은 501개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과 같다.

<표 2-1>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단위: 개, %)

구분	계	농업법인					어업법인			
		계	영농조합	농업회사	일반회사	기타	계	영어조합	일반회사	기타
2007	6,473	5,854	4,624	896	62	272	619	490	89	40
2008	6,935	6,306	5,075	928	56	247	629	501	85	43
증감률	7.1	7.7	9.8	3.6	-9.7	-9.2	1.6	2.2	-4.5	7.5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주) 기타는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을 의미함.

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다음은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8년 말 기준 각각 3,787개, 675개의 출자 법인이 있으며, 출자금 규모가 1억~5억원에 속해 있는 법인이 각각 1,682개, 282개 법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법인 역시 전체 369개 법인 중 1억~5억원에 속해 있는 법인이 175개 법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과 같다.

<표 2-2> 출자금 규모별 농·어업법인 사업체 현황

구분		항목	2007	2008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출자법인수 (개)	3,294	3,787
		5천만원미만	796	878
		5천만원~1억원	729	838
		1억~5억원	1,412	1,682
		5억원이상	357	389
	농업회사법인	출자법인수 (개)	608	675
		5천만원미만	108	105
		5천만원~1억원	157	171
		1억~5억원	238	282
		5억원이상	105	117
어업법인	출자법인수 (개)	358	369	
	5천만원미만	66	55	

	5천만원~1억원	87	87
	1억~5억원	154	175
	5억원이상	51	5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3. 농·어업법인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다음은 농·어업법인의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도 농업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법인당 약 3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하였으며,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약 5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어업법인의 경우,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법인당 약 1억 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융자금 잔액은 법인당 약 3억 2천만원으로 10.9%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3> 농·어업법인의 정보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과 같다.

<표 2-3> 농·어업법인의 정보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업법인		어업법인	
		정 부 보조금	정 부 융자금	정 부 보조금	정 부 융자금
2007	집 계 법인수	1,864	847	124	109
	법인당	324.6	505	202.6	286
2008	집 계 법인수	2,043	766	132	104
	법인당	337.9	547.3	193.1	317.3

증감률	4.1	8.4	-4.7	10.9
-----	-----	-----	------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농·어업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도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자산은 약 14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는 9억 6천만원, 자본은 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8%, 2.9%,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어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자산 및 부채가 각각 10억 4천만원, 7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0.6%, 8.2% 증가한 반면 자본은 3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과 같다.

<표 2-4> 농·어업법인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업법인			어업법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2007	집 계 법인수	2,597	2,597	2,597	232	232	232
	법인당	1,513	988	524	1,035	680	355
2008	집 계 법인수	3,075	3,075	3,075	253	253	253
	법인당	1,455	959	496	1,041	736	305
증감률		-3.8	-2.9	-5.3	0.6	8.2	-14.1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다음은 농·어업 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도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매출액은 약 18억 1천만원, 영업이익은 약 3천만원, 당기순이익은 약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7%, 10.7%, 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어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매출액은 약 10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천700만원, 당기순이익은 2천400만원으로 각각 7.5%,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과 같다.

<표 2-5> 농·어업법인의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업법인			어업법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7	집계법인수	2,597	2,597	2,597	232	232	232
	법인당	1,728	28	28	933	40	27
2008	집계법인수	3,075	3,075	3,075	253	253	253
	법인당	1,809	31	39	1,073	37	24
증감률		4.7	10.7	39.3	15	-7.5	-11.1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6. 농·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다음은 농·어업법인의 사업체 종사자 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가. 농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2008년 말 기준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5,392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당 종사자 수의 경우, 2007년 8.6명이고 2008년 7.9명으로 전년에 비해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 농업법인의 종사자현황과 같다.

<표 2-6> 농업법인의 종사자현황

(단위: 명, %)

	종사자 합 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출자자	고 용		
2007	33,420	21,828	10,671	11,157	11,592	8.6
	(100)	(65.3)	(31.9)	(33.4)	(34.7)	
2008	35,392	23,325	11,338	11,987	12,067	7.9
	(100)	(65.9)	(32.0)	(33.9)	(34.1)	
증 감	1,972	1,497	667	830	475	-0.7
증감률	5.9	6.9	6.3	7.4	4.1	-8.1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나. 어업법인의 종사자 현황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007년 2,744명, 2008년 2,79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말 법인당 종사자수는 7.6명으로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 어업법인의 종사자현황과 같다.

<표 2-7> 어업법인의 종사자현황

(단위: 명, %)

구분	종사자 합 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출자자	고 용		
2007년	2,744	1,695	1,002	693	1,049	7.7
	(100)	(61.8)	(36.5)	(25.3)	(38.2)	
2008년	2,793	1,644	955	689	1,149	7.6
	(100)	(58.9)	(34.2)	(24.7)	(41.1)	
증 감	49	-51	-47	-4	100	-0.1
증감률	1.8	-3	-4.7	-0.6	9.5	-1.3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7. 경영상태

가.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2008년 말 농업법인당 자산은 약 14억 6천만원, 부채는 9억 6천만원, 자본은 약 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각각 3.8%, 2.9%, 5.3% 감소하였으며, 농업법인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3.3%로 전년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8>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와 같다.

<표 2-8>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단위: 개, 백만원, %, %p)

구분	결 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자본대비 부채비율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2007년	2,597	1,513	665	847	988	589	399	524	188.5
		(100)	(44.0)	(56.0)	(65.3)	(38.9)	(26.4)	(34.6)	
2008년	3,075	1,455	650	805	959	577	383	496	193.3
		(100)	(44.7)	(55.3)	(65.9)	(39.7)	(26.3)	(34.1)	
증 감	478	-58	-15	-42	-29	-12	-16	-28	4.8
증감률	18.4	-3.8	-2.3	-5.0	-2.9	-2.0	-4.0	-5.3	2.5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나.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2008년 말 어업법인당 자산은 10억 4천 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으며, 부채 역시 7억 3천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의 경우 3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41.3%로 전년에 비해 49.8%p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9> 어업법인의 경영실태와 같다.

<표 2-9> 어업법인의 경영실태

(단위: 개, 백만원, %, %p)

구분	결 산 법인수	자산			부채			자본	자본대비 부채비율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2007년	232	1,035	522	513	680	354	327	355	191.5
		(100)	(50.4)	(49.6)	(65.7)	(34.2)	(31.6)	(34.3)	
2008년	253	1,041	530	511	736	398	339	305	241.3

		(100)	(50.9)	(49.1)	(70.7)	(38.2)	(32.6)	(29.3)	
증 감	21	6	8	-2	56	44	12	-50	49.8
증감률	9.1	0.6	1.5	-0.4	8.2	12.4	3.7	-14.1	26.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참조

8. 국내의 식품제조업 현황

가.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다음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총자산(GDP)대비 식품산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식품산업총생산액은 각각 295,790억 원, 326,950억 원, 331,4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식품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0>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과 같다.

<표 2-10> 국내산업 대비 식품산업의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제조업GDP	2,042,390	2,098,350	2,233,240
국내총생산(GDP)	8,066,220	8,478,760	9,011,880
식품산업총생산액	295,790	326,950	331,480
제조업GDP대비	14.48	15.58	14.84
GDP대비	3.7	3.9	3.7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식품산업 주요통계 참조

나.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

다음은 국내의 식품제조업체의 매출액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매출액의 경우, 도축업이 52,861억 원으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당 평균매출액을 살펴보면, 비알콜 음료 및 얼음제조업이 517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1> 식품제조업 매출액 현황과 같다.

<표 2-11>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원재료 구입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업체 수	연간 총 매출액		연간총 원재료 구입비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율	
		업체당 평균	전체	업체당 평균	전체		
전체	6,090	67	409,231	37	222,430	54.4	
업종별	도축업	243	218	52,861	157	38,038	7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44	70	37,933	53	28,782	75.9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28	35	32,112	20	18,280	56.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68	9.78	7,512	5.51	4,232	56.3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747	27	20,271	14	10,695	52.8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85	118	10,015	71	6,064	60.5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86	463	39,823	192	16,533	41.5	
곡물 가공품 제조업	164	72	11,857	45	7,433	62.7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66	261	17,216	157	10,393	60.4	
떡,빵 및 과자류제조업	779	68	52,792	11	8,854	16.8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7	150	17,592	76	8,836	50.2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441	50	22,118	21	9,266	41.9	
기타 식료품 제조업	861	30	25,830	15	12,629	48.9	
발효주 제조업	139	25	3,508	9.19	1,277	36.4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0	254	5,090	84	1,689	33.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02	517	52,702	387	39,427	74.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2009 참조

다.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다음은 국내의 식품제조업체의 농축수산물 취급현황을 업종별 매출액 규모별로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2> 농축수산물 취급 품목 수 분포 현황과 같다.

<표 2-12> 농축수산물 취급품목 수 분포현황

(단위: 기업, %)

구분	업체 수	1개	2개	3개	4개	5-9개	10-19개	20개 이상	평균 (개)	
전 체	6,090	44.9	20.7	8	4.4	15.9	4.6	1.5	3.3	
업 중 별	도축업	243	69.8	26.3	1.5	-	2.3	-	-	1.4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544	50.7	27	8	2.8	11.1	0.5	-	2.2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928	48.1	25.2	8.5	3.7	13.8	0.7	-	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68	81.9	11.1	7	-	-	-	-	1.3
	과실, 채소가공및저장 처리업	747	23.4	9.9	3.4	6.6	49.8	5.7	1.1	5.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85	45.8	23.5	26.8	-	3.9	-	-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86	78.3	8.9	7	1.9	3.8	-	-	1.4
	곡물 가공품 제조업	164	53.7	12.1	11.5	4.8	5.7	12.1	-	3.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66	57.9	27.8	-	3.6	7.2	3.6	-	2.4
	떡,빵 및 과자류제조업	779	11.7	38.1	13.9	11.9	21.7	1.8	0.9	3.5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7	40.8	32.4	3.2	3.5	13	7	-	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441	40.2	15.9	10.5	10.9	17.2	5.4	-	3.2
	기타 식료품 제조업	861	43.1	9.8	6.3	1.4	12.1	18.6	8.7	6.7
	발효주 제조업	139	45	49.1	5.9	-	-	-	-	1.6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0	63.3	36.7		-	-	-	-	1.4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02	45.6	24.6	10.7	-	19.1	-	-	2.4
매출 규모 별	10억 미만	3,240	45.9	22	7.7	4.3	14.8	3.5	1.7	3.2
	10-100억 미만	2,326	44	19.8	8	4.3	18.1	4.9	0.9	3.4
	100-400억 미만	365	37.6	17.4	10.9	6.9	14.1	11.4	1.8	4.2
	400억 이상	159	55.9	13.4	5.7	3.8	12.1	6	3.1	3.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2009 참조

라.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다음은 2008년 현재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및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8,120억 달러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이 3,820억 달러, 러시아가 2,490억 달러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시장의 규모가 460억 달러로, G-20 국가 중 17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3>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와 같다.

<표 2-13> G-20 국가의 식품시장 규모

(단위: 억\$)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1	미국	8,120	11	스페인	990
2	일본	3,820	12	멕시코	660
3	러시아	24,960	13	터키	610
4	프랑스	1,940	14	인도네시아	550
5	독일	1,840	15	호주	520
6	이탈리아	1,780	16	캐나다	470
7	인도	1,690	17	한국	460
8	브라질	1,620	18	아르헨티나	350
9	중국	1,510	19	남아공	280
10	영국	1,340	20	사우디아라비아	160

자료: 김태윤(2010) 자료 수정 후 재인용

마.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

다음은 2008년 현재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3,032달러로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탈리아가 3,019달러, 일본이 2,993달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가 951달러로, G-20 국가 중 11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4>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2008년 기준)과 같다.

<표 2-14> G-20 국가의 1인당 연간 식품소비액 규모(2008년 기준)

(단위: \$)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1	프랑스	3032	11	한국	951
2	이탈리아	3019	12	아르헨티나	871
3	일본	2993	13	터키	851
4	미국	2670	14	브라질	845
5	호주	2422	15	사우디아라비아	656
6	독일	2236	16	멕시코	623
7	영국	2187	17	남아공	574
8	스페인	2152	18	인도네시아	236
9	러시아	1756	19	인도	147
10	캐나다	1424	20	중국	112

자료: 김태윤(2010) 자료 수정 후 재인용

제2절 선행연구

농·어업법인의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박문호·전익수(2000), 김정호 등(2004) 및 서희열·정규언(2006) 등의 연구가 있다.

박문호·전익수(2000)은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법인경영의 평가를 토대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발전 방향 및 정책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명무실 법인의 정비, 법인의 설립 동기 및 목적에 맞는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 유형별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영농대행형의 경우 사업체로서 존속을 위해서는 연간 조업체계의 확보가 선결과제로서 지역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출자증액에 따른 등기 비용 문제 해소, 세제상의 혜택, 정책지원의 우대조치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넷째, 영세법인에 대한 과도한 시설 투자가 억제되어야 한다. 설립된 법인의 다수가 매출이익은 실현하고 있으나 자본이익은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과도한 시설투자로 대규모의 자본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고품질 생산을 통한 특정 수요층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술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조세제도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김정호 등(2004)은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기업농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세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소득세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한다. 둘째, 세율은 추후 농업소득세율 개정시 소득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취득하는 것은 현행대로 50% 감면한다. 넷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다섯째,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다섯째, 농업법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되도록 행정자치부 해석지침을 변경한다. 여섯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업용 자재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서희열·정규언(2006)은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의 연구논문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작

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세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의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 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을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어업법인에 관한 연구논문 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다만, 이종성(2006)의 연구보고서 ‘농·어업부문조세감면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에서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현행 농·어업부분의 조세감면제도 전체를 분석하여 농업부분과 어업부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영어조합법인이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어선·어업권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나 이들 법인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차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면 등(2008)의 연구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까지 합하여도 향후 발생 가능한 근로자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 있으며, 농업지원의 경우 그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TA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경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15> 수산관련 세제개선

구분	개선내용
어업경비절감 세제개선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확대
	육상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자영업시설물 및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어획물운반법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수산관련 사업· 투자촉진세제 개선	어업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협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업용시설 신규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어업회사법인제도,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 도입 및 조세지원
	어업법인의 영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영어승계 관련 세제지원	영어상속재산범위 확대
	영어를 위한 어가주택 취득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어선·어업권 등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어업권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자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어촌을위한 새로운 활로』, 2007 수정후 재인용

수산경제연구원(2007)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자

원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 생산자단체의 경영개선 촉진, 수산정책금융 지원 효율화, 수산관련 세제개선 방안을 <표 2-15>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종성(2007)는 취약한 어촌계의 세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어촌계에 대한 세무대응능력 배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고 또한 대부분 오랜 되었다. 따라서 매년 변화되는 조세제도와 최근의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농·어업법인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농·어업법인과 관련된 조세뿐만 아니라 농·어업과 관련된 조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조세지원제도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

제1절 개요

현행 농·어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있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농·어업육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세지원 즉 조세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제2절 현행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

국세청의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농·어업법인의 징세현황을 살펴본다.

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다음은 농·어업 및 임업법인의 2007년과 2008년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신고법인수의 경우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각각 2,312개 법인, 577개 법인으로 2007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2008년의 수입금액 역시 2007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의 과세표준은 농업법인의 경우, 98,852 백만원으로 2007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어업법인의 경우, 103,018 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과 같다.

<표 3-1>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신고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농업	1,439	2,469,624	112,740	2,312	2,913,902	98,852
어업	539	1,559,817	56,183	577	1,830,565	103,01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2009

주) 2006년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2. 법인세 현황

다음은 농·어업 및 임업법인의 2007년과 2008년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의 법인세 납부법인 수는 909개 법인으로 전년 대비 약 18% 증가 하였으며, 납부세액의 경우, 16,350개 법인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2> 법인세 현황과 같다.

<표 3-2> 농·어업 및 임업법인의 법인세 현황

(단위: 개 법인, 백만원)

구분	법인수	납부세액
2007년	771	15,119
2008년	909	16,350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8. 2009

주) 세부업종별 현황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제3절 현행 농·어업 관련 세법규정 내용

1. 법인세법

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현행규정

특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 ① 전·답 및 과수원(농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방세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외) 안의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②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나. 법인세 산출세액과 세율

(1) 현행규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②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2. 소득세법

가. 비과세소득

(1) 현행규정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2조).

- 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나. 사업소득

(1) 현행규정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9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다. 총수입금액 불산입

(1) 현행규정

농업·어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신이 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수

산물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26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라. 비과세 양도소득

(1) 현행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마.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1) 현행규정

농가부업소득이란 농민 또는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

품(藁工品)제조·민박(농어촌민박사업)·음식물판매·특산물(전통식품, 수산 특산물)제조·전통차⁹⁾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위 ①항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바. 1세대1주택의 특례

(1) 현행규정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¹⁰⁾을 적용한다.

-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소령 9④)

10)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소령 154①)

-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¹¹⁾
-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¹²⁾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 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3. 조세특례제한법

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 11)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소령 155⁹⁾)
 - 12)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155¹⁰⁾)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 현행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13)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5항).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 현행규정

영농조합법인¹⁴⁾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의미함.

득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방세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이와 같이 납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및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동법 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 현행규정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방세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채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동법 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현행규정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불)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또한,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현행규정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 또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 현행규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 초지: 「초지방세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단,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함)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또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하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현행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당기순이익과세)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¹⁵⁾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¹⁶⁾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15) 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

16)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 현행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자.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1) 현행규정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 또는 실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업자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어업보조금)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차.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1) 현행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단,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 ①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③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④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⑥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⑦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⑧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현행규정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③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현행규정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또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파.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1) 현행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농어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 등(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 ①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하. 인지세의 면제

(1) 현행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단, 동일인이 받는 용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② 어린이예금통장과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어촌계의 계원을 포함)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

입·입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가. 증권거래세의 면제

(1) 현행규정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 또는 동법 부실우려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부실수협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현행규정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99의4①) 다만,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농어촌주택)

- ㉠ 취득 당시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고향주택)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단, 수도권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현행규정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과 ②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 ①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②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① 및 ②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4. 지방세법

가. 농어민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규정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

-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취득하는 농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한,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

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 ①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조합의 중앙회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또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6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나.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규정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한,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7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규정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1조).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라.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규정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또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2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1) 현행규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또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63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바. 영농자금 등의 용자지원을 위한 감면

(1) 현행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업인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64조). 단,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 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사.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1) 현행규정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 제283조).

- 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 ②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 ④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5. 기타 세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초공제)

(1) 현행규정

영농[양축(養畜), 영어(영어) 및 영림(영림)을 포함]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 (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①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나.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1) 현행규정

농·어민(양축가 포함)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다. 부가가치세(면세)

(1) 현행규정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2) 적용대상

구분	법인		농어민
	농업법인	어업법인	
적용여부	○	○	○

제4절 현행 세법규정의 시사점

1.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FTA의 확대 등 대외시장 개방의 압력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유도를 위한 전체적인 조세지원제도는 미흡하다고 본다.

2.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

한 조세지원제도의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본다.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이력 관리에서부터 원천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다른 업종과 융합해서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조세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

3. 세계화에 대한 대처 미흡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제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지원 등이 부족하다고 본다.

4.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보는 안정적인 국민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문제이므로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조세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5. 잉여 농산물에 대한 대처 미흡

현재 잉여 농산물에 대한 처리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잉여 농산물은 있다. 따라서, 농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6. 유통에 대한 대처 미흡

농수산물은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4장 주요국의 농·어업법인의 조세제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의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

1. 농·어업 유류비 세액공제(farms and fishing fuel tax credit)¹⁷⁾

어류의 포획, 운반을 위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류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장을 찾기 위해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류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유류의 종류는 휘발유(gasoline), 엔진연료(special motor fuels), 응축된 자연 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디젤연료(undyed diesel fuel) 등이 있다.

사업목적에 위하여 사용된 선박이나 보트의 연료에 대한 유류비 세액공제 또는 상환제도가 있다. 농업은 가축, 낙농, 어류, 조류, 과일, 모피, 농장, 과수원, 목장, 비닐하우스, 원예, 양어장 등 사업목적의 농사종류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호주도 농업 및 어업과 관련하여 유류비를 세액공제하고 있다.¹⁸⁾

2. 감가상각비 특례

어업관련 그물, 주전자, 올가미는 7년간 상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1년 내 비용화 할 수도 있고 그물은 내용연수를 7년 이상으로 상각할 수도 있다.¹⁹⁾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

17) http://www.irs.gov/publications/p510/ch02.html#en_US_publink1000116950 참조

18)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78691.htm> 참조

19)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dustries/article/0,,id=205571,00.html> 참조

하면 농업은 기준내용연수 5년(신고내용연수는 4년 ~ 6년)이며, 어업(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는 기준내용연수 10년(신고내용연수 8년 ~ 12년)이다. 어업의 경우 미국의 경우보다 상각내용연수가 길어 조기에 해당 자산을 비용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소득세제²⁰⁾

가. 배당소득의 비과세

농업협동조합이나 면세기관이 지급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일반 배당소득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본(양도)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개인 납세자가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

단일 목적의 농업 및 원예구조물, 기계, 가축 등의 감가상각되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 동안 납세자가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으로 신고된다. 실현된 처분이익이 감가상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다. 운영업손실(NOL)의 소급공제

일반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전 2년 전부터 소급하여 환급(carry back)을 받고 남은 손실은 순차적으로 이월(carry forward)되어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에서 발생하는 일부 손실(farming loss)은 5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직전 사업연도(1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20)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 2009.10. 장근호 참조함.

있다.²¹⁾

4. 농·어업소득의 평준화 제도

농업소득의 평준화제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S corporation의 주주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법인(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S corporation, 부동산(estates), 신탁(trusts)는 이용할 수 없다.²²⁾ 농업소득의 평준화제도는 Form 1040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어업소득은 어획, 양식 등 어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²³⁾

제2절 일본

일본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와 달리 누진세율이 아니다. 보통법인의 경우에는 30%이며, 연간 소득이 80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22%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법인이 부담하는 주요 지방세로서 법인사업세가 있는데 이 법인사업세는 기업이 국세인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인사업세의 세율은 과세소득의 9.6%이다. 지방세법 제2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농사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세를 비과세한다.

1. 농업법인의 세제지원

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21)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22)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dustries/article/0,,id=99020,00.html> 참조

23) 2009 Instructions for Schedule J 참조

(1) 의의

일본은 납세의무자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과 신고납부의 장려를 위해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청색신고란 복식부기 등의 방법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에 의해 매출이나 매입 등의 수치를 산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인과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가진 개인이 소정의 기간까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청색신고를 할 수 있다.²⁴⁾ 다만, 한번 승인을 받았어도 장부 등의 기장보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장부에 기재한 경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색신고의 승인이 취소된다.

이와 같은 청색신고 대상에는 농업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농업법인이 청색신고의 대상법인으로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신청방법

법인세의 확정신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한다. 청색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색신고를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전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청색신고의 해당 여부의 확인을 거쳐 승인을 한다.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청색신고를 행할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일정한 복식부기 방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 정확히 계산)으로 장부에 기장을 하고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3) 과세특례

(가)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24) 法人税法 第121条.

법인세법상 통상적으로 10만엔 미만의 상각자산 대상금액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 감가상각이라 한다. 청색신고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품명이나 금액을 기재하여 연간 누계액이 3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조건으로 30만엔 미만의 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나) 결손금의 이월공제

청색신고를 하는 법인의 경우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으로(통상적으로 5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법인이 해당 연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특례

(1) 농지양도에 따른 특별공제

농지를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업위원회에서 정한 인정양도 즉, 농지를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이 특별공제된다. 이러한 특별공제는 그 요건에 따라 800만엔과 1,500만엔의 특별공제가 있다.

(가) 800만엔의 특별공제

농지양도에 따른 특별공제 가운데 800만엔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권고와 관련하여 협의, 조정 또는 인정 양도한 경우²⁵⁾
- ② 농지보유합리화법인(農地保有合理化法人)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農地利用集積円滑化団体)에 양도한 경우²⁶⁾
- ③ 농지이용집적계획에 의해 양도한 경우²⁷⁾

25) 租稅特別措置法 第34条の3 第2項第1号 `第65条の5 第1項第1号 `第68条の76 第1項.

26) 租稅特別措置法 第34条の3 第2項第1号 `第65条の5 第1項第1号 `第68条の76 第1項.

27) 租稅特別措置法 第34条の3 第2項第2号 `第65条の5 第1項第2号 `第68条の76 第1項.

(나) 1,500만엔 특별공제

농지양도에 있어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에 근거하여 매입협약에 의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매입된 경우²⁸⁾에는 1,500만엔의 특별공제를 받는다.

(2)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지역의 토지 등의 과세특례

농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해당 연도 내에 특정 지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환(買換)된 토지 등을 농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²⁹⁾

- ① 양도수입금액이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수입금액의 80%를 초과한 부분에 과세 된다.
- ② 양도수입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0%를 초과한 부분에 과세 된다. 또한, 교환의 경우에도 이것을 매환(買換)으로 보아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1) 농지보유시의 고정자산세의 특례적용

토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에 따라 고정자산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의 평가액(과세표준액)에 세율 1.4%를 곱하여 산출한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 일반농지

일반농지란 시가화구역농지(市街化區域農地)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을

28) 租稅特別措置法 第34條の2 第2項第25号 `第65條の4 第1項第25号 `第68條の75 第1項.

29) 租稅特別措置法 第37條 `37條の4 `65條の7 `65條の9 `68條の78 `68條の80

제외한 농지를 말하며, 이러한 일반농지는 농지 평가에 있어 그 매매가액의 55%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나) 시가화구역농지

시가화구역이란 토지이용을 세분화 하는 등의 시가지의 개선 등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³⁰⁾ 이러한 시가화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구(生産緑地地區)내의 농지·일반시가화구역농지(一般市街化區域農地)·3대도시망의 특정시³¹⁾의 시가화구역농지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1) 생산녹지내의 농지

생산녹지를 포함한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 평가에 있어서 농지 판매가격에 55%를 적용하여 다른 일반 고정자산보다 낮은 평가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고정자산세보다 낮은 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2) 일반시가화구역 내의 농지

일반시가화 구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접유사주택의 가격에서 조성비 상당액³²⁾을 차감하고 해당 연도의 택지평가액의 1/3과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에서 부담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가운데 낮은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세를 산정하고 있다.

3) 특정시가화구역 내의 농지

특정시가화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시가화구역 내의 농지와 같이 근접유사택지의 가격에서 조성비상당액을 차감하고 해당연도의 택지평가액의 1/3과 경감율³³⁾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과 전년도의 과세표준액에서 해당연도의 택

30) 三重県, 『市街化調整区域における地区計画の県同意に関する指針』, 2010.4. p. 2.

31) 東京都の特別区及び首都圏 `近畿圏` `中部圏`의 既成市街地 `近郊整備地帯` 등에 소재하는 시

32) 여기서 조성비 상당액은 해당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성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3) 여기서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지평가액에 1/3과 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가운데 낮은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세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농지취득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특례

농지를 매입하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행하게 되며, 등기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과세된다.

$$\text{등록세액} = \text{부동산가액(고정자산과세대장가액)} \times \text{세율(매매(20/1000))}$$

다만, 2011년 3월31일까지는 세율적용에 있어서 10/1,000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농업용지구 지역내의 것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농지는 그 세율적용에 있어서 8/1,000으로 한다.

- ① 지역농업자가 농업용지이용집적계획을 활용한 농지를 매입한 경우³⁴⁾
- ② 지역농업자가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농지소유자대실사업에 한함)을 활용한 농지를 매입한 경우³⁵⁾
- ③ 특정농업법인이 농지법에 규정한 협의에 의해 유휴농지를 매입한 경우³⁶⁾

(3) 농지취득시의 부동산취득세의 특례

농지취득시에는 통상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세가 과세된다.

연도	최초연도	2년도	3년도	4년도
경감율	0.2	0.4	0.6	0.8

34) 租稅特別措置法 第77条 第1項.

35) 租稅特別措置法 第77条 第2項.

36) 租稅特別措置法 第76条.

$$\text{부동산취득세액} = \text{취득가격(고정자산세과세대장가격)} \times \text{세율}(4\%)$$

다만,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세율을 3%로 적용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① 농업용지이용집적계획을 활용한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2/3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³⁷⁾
- ②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농지소유자대리사업에 한함)의 활용에 의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2/3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³⁸⁾
- ③ 특정농업법인이 농지법에 규정한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 유휴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2/3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³⁹⁾
- ④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가 농지판매 등 사업실시에 의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⁴⁰⁾

라. 농업에 대한 사업세·사업소세의 비과세

사업세에 대해서는 개인이 행한 특정사업 및 법인의 행한 사업이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정령지정도시 등의 지정도시에 있어서 사업소에서 사업을 행한 자와 사업소를 신증축한 자가 과세의 대상이 된다. 우선 사업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업자(개인, 농업조합법인인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사업세는 비과세된다. 또한 사업소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농업자가 직접생산용으로 제공한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37) 地方稅法附則 第11條 第2項.

38) 地方稅法附則 第11條 第22項.

39) 地方稅法附則 第11條 第26項.

40) 地方稅法 第73條の27の6 第1項.

마.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농작물 재배를 통한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농업경영개선 계획 등에 따라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금으로서 적립한 경우 그 적립액을 법인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적립한 준비금을 사용하든지 수령한 교부금 등을 그대로 이용한 농업용지나 농업용기계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축기장⁴¹⁾할 수 있다. 또한 특례를 받는 경우 일정한 방법⁴²⁾으로 기장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바. 농업용기계장치의 설비투자과 관련된 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촉진세제

농업용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받는 대상자는 청색신고자인 농업자나 중소기업자(상시고용한 종업원이 1,000명 이하)이다. 또한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 등(예를 들면 트랙터·콤바인·모내기용 기계 등)은 160만엔 이상의 신품이 대상이 된다. 또한 기타 기구·비품에서는 120만엔 이상의 전자계산기 등, 무형고정자산에서는 자산 이용으로 70만엔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① 30%의 특별상각

- 통상의 감가상각에 추가하여 취득액의 30%분의 상각비를 곱한 특별상각을 인정한다.

② 7%의 특별세액공제

- 취득액의 7%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법인세액 20%가 상한이며, 상환을 넘는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41) 압축기장이란 교부금 등에 의해 취득한 농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일정액까지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에 의해 그 해(사업연도)의 과세사업소득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42) 일정한 방법에 의한 기장이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농업협동조합 등⁴³⁾이 국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의 교부(부동산취득세는 제외), 농업근대화자금, 농업개발자금(고정자산세만), 농림어업금융공단자금, 오키나와진흥개발 금융공단자금 등에 의해 취득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농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과세특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취득세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한 과세표준은 대여금을 근거로 계산한 일정액을 가액에서 공제한 액을 말한다. 즉 과세표준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 = \text{취득가액} - \text{취득가액} \times \left(\frac{\text{대여금액}}{\text{취득가액}} \right)$$

(나) 고정자산세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장치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가액의 1/2이 된다. 이러한 고정자산세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새로이 고정자산세가 부과되는 연도부터 3년도분에 한 한다.
- ② 용자에 의해 취득한 기계·장치는 한 대 또는 한기의 취득가액이 330

43) 여기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사조합법인, 담배경작조합, 담배경작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여기서 담배경작조합과 담배경작조합연합회는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특례만을 적용받는다.

만엔 이상의 것에 한 한다.

- ③ 교부금에 의해 취득한 기계·장치는 500만엔 이상의 교부금을 받고 한 대 또는 한기의 취득가액이 330만엔 이상의 것에 한 한다.

(다) 사업소세

농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공동이용에 제공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3) 농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가) 농업에 사용된 경유거래세의 면세

농업용 기계 등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면허증의 교부 등의 절차를 받은 경우에 한 하여 경유거래세를 면세할 수 있다.

1) 대상이 되는 농업용 경유

농업을 영위한 자(농업 가운데 기간적인 작업을 모두 위탁을 받은 농작업을 행한 자를 포함)가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 등에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말한다.

2) 면세절차

농업용기계의 동력원이 되는 경유에 대하여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미리 도도부현지사로부터 '면세경유사용자증'의 교부를 받는다.
- ② 면세경유의 수량, 거래예정판매업자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도부현지사에 제출하고 '면세증'의 교부를 받는다.
- ③ 석유판매업자에 '면세증'을 제시하고 면세경유를 구입한다.
- ④ '면세경유사용자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각 도도부현에 있어서 정한 기일까지 구입한 수량 등을 보고한다.

(나) 농업용 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및 환급

농업자가 농업에 사용한 증요는 석유석탄세(2,040엔/kl)가 면세되고 있다. 우선 농업용 수입 증유의 경우는 수입업자가 석유석탄세를 면세되기 때문에 농업자에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석유석탄세가 과세된 원유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국산증유로 농업용에 사용된 경우에는 석유석탄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조자에 환급되어 농업자의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사. 농사조합법인(農事組合法人)이 분배한 종사분량배당 등의 특례

농사의 경영을 행하는 농사조합법인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해 확정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잉여금의 배당을 종사분량 또는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⁴⁴⁾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종사분량배당금(從事分量配当金)⁴⁵⁾ 또는 이용분량배당금(利用分量配当金)⁴⁶⁾을 소득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농사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를 보통법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1> 농사조합법인의 과세특례 효과

구분	보통법인	농사조합법인
법인세율	30%	18% (22%)
잉여금의 배당	과세	손금에 산입 (종사분량배당, 이용분량배당)

2. 어업법인의 세제지원 현황

가. 청색신고의 특례

44) 法人稅法第60條の2 및 第66條.

45) 조합원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사업연도 가운데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46) 조합원이나 구성원에 대한 사업연도 가운데 취급했던 물량, 가액 등의 농업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잉요한 분량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을 말한다.

어업법인 역시 농업법인과 같이 대상법인으로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농업법인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나. 어선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매각하고 새로운 어선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는 매각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매각차이에 따라 구입한 어선에 대하여 압축기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선의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에 대한 예를 들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어선(장부가액 1,000만엔)을 1,500만엔으로 매각하고 새로운 1,500만엔 이상의 어선을 구입한 경우

$$\text{압축한도액} = (\text{양도수익이 구입가격의 어느 한쪽이 적은 쪽의 금액}) \times \frac{\text{양도수익} - \text{장부가액} - \text{양도경비}}{\text{양도수익}} \times 80\%$$

위 산식에 따라 압축기장액은

$$400\text{만엔} = 1,500\text{만엔} \times \frac{1,500\text{만엔} - 1,000\text{만엔} - 0\text{만엔}}{1,500\text{만엔}} \times 80\%$$

이 경우 최대한 400만엔을 압축기장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례를 적용한 경우 최대 120만엔의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자 가운데 주로 자가 노동력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⁴⁷⁾ 및 소규모인 수

산동식물의 포획사업⁴⁸(대형정치 및 양식업을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업자의 사업세는 비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어업용기계장치 등의 설비투자 등과 관련된 특별조치

(1) 중소기업 등 투자촉진세제

어업용기계 등의 경우에도 농업용 기계와 마찬가지로 그 취득의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받는 대상자는 청색신고자인 어업자나 중소기업자(상시고용한 종업원이 1,000명 이하)이다. 또한 어업용 기계·장치 등은 160만엔 이상의 신품이 대상이 된다. 또한 기타 기구·비품에서는 120만엔 이상의 전자계산기 등, 무형고정자산에서는 자산이용으로 70만엔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① 30%의 특별상각

- 통상의 감가상각에 추가하여 취득액의 30%분의 상각비를 곱한 특별상각을 인정한다.

② 7%의 특별세액공제

- 취득액의 7%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법인세액 20%가 상한이며, 상환을 넘는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2) 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특례

어업협동조합 등⁴⁹이 국가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의 교부(부동산취득세는

47) 여기서 주로 자가 노동력을 행한 사업이란 사업주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의 노동력에 의해 해당 사업을 행하는 일수의 합계가 그 해의 연속 노동일수 1/2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8) 소규모 수산동식물의 포획사업이란 무동력 또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사용하거나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고 행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사업 및 어구를 정치하여 이루어진 수산동물의 포획사업을 말한다.

49) 여기서 특례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사조합법인, 담배경작조합, 담배경작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여기서 담배경작조합과 담배경작조합연합회는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제외), 어업근대화자금, 연안어업개선자금(경영 등 개선자금으로 고정자산세만 적용), 일본정책금융공단자금,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단자금 등을 가지고 취득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어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어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용작업보관시설, 수산선도보관유지시설, 어업용 유수공급시설(漁船用油水供給施設), 수산종묘생산시설, 수산물가공시설, 수산물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업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그 내용은 생략한다.

(3) 어선에 대한 특례

어선은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그 과세표준 산정시 경감조치를 두고 있다. 어선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표 4-2> 어선의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산정

구분	대 상	과 세 표 준
외향선박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또는 농림수산대신이 허가·승인한 어선에 종사하는 총톤수 9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	선박가격의 1/6
	외향선박가운데 외국화물을 위해 취항하는 선박	선박가격의 1/10
준외향선박	농림수산대신이 허가·승인한 어선에 종사하는 총톤수 45톤 이상 90톤 미만의 선박	선박가격의 1/4
내향선박	상기 이외의 어선(유어선 등을 제외)	선박가격의 1/2

특례만을 적용받는다.

마. 어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 등

어업에 사용된 경유거래세와 어업용 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및 환급은 농업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바. 기타 어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특별수선준비금

청색신고를 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선비용을 적립하는 경우는 손금(개인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비용을 특별수선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에 있어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액은 특별수선에 필요한 비용에 3/4을 곱한 후 12월/60월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업협동조합이 분배하는 사업분량배당 등의 특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어업협동조합 등(어업협동조합, 일부 어업생산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 지출한 다음의 사업분량배당 등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① 이용분량배당금

- 조합원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에 취급한 물량, 가액 등의 어업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배분한 금액

② 종사분량배당금

- 조합원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배분한 금액

제3절 영국

1.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⁵⁰⁾

농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위해서 농업재산이 in the United Kingdom, the Channel Islands and the Isle of Man에 있어야 하며, 농업에 사용 중이어야 한다. 사망 전 2년 동안 해당 농업재산을 소유해야 하며, 만약 농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망 전 7년 동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지, 목초지, 농가, 자라고 있는 작물 등이 있으며 요건이 충족할 경우 100% 면제된다.

2. 농업건물의 감가상각방법

농업건물은 매년 4%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지출이 발생한 해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⁵¹⁾

제4절 프랑스

1. 소득세⁵²⁾

프랑스의 농업소득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농업을 경작하는 자, 농업소득법인(파트너십)의 파트너, 소작인 등이다.⁵³⁾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수

50) <http://www.hmrc.gov.uk/inheritancetax/pass-money-property/agricultural-relief.htm> 참조

51)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편-, 2009.10, 박정수, p.114

52) 소득세 이하 프랑스의 조세제도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 2009.10 안창남의 책을 참조하여 재편성한 것이다.

53) 법인세 적용을 받는 법인이 농업소득이 있다면 이는 법인세 적용대상 소득이 된다.

입금액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기에 납세협력의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농업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투자금액에 대해서 5년 동안 감면규정을 적용받고 있다.⁵⁴⁾

생명농업(agriculture biologique)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40%이상이 생명농업으로부터 얻어진 경우에는 1,200유로에서 헥타르당 200유로(다만, 4헥타르가 한도)를 더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농업소득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동일 소득에서 우선 상계하고 미상계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상계된다.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은 6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프랑스 내 소재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그러나, 농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농업종사자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3. 사업소세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9.6%이다. 그러나, 농업생산품, 어업생산품, 양어장 생산품 및 가금사육장 생산품 중 변형되지 아니한 것, 농업에 이용되

54) 4,000유로부터 26,000유로까지 감면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안창남 p.110을 참조할 것

는 석회질 비료, 비료, 유황·황산동·황산동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광분 및 최소한 10%의 동이 포함된 구리, 인가된 살충제 또는 농업부장관이 판매를 허가한 살충제는 정상세율보다 낮은 5.50%를 적용하고 있다.

제5장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제1절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에 기술되어 있으며, 금속, 생산기반(임계 성능 생산기반, 그린 에너지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computing,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분야가 해당된다.⁵⁵⁾

현행 조세제도에 의하면 원천기술 분야에 농수산물 분야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는 현재 농수산물을 이용한 원천기술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업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단순한 먹거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농수산물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의학, 소재 등과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특성을 DNA분석기법 등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서 동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액공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향후 농수산물 분야가 포함될 경우 세액공제제도의 한시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2. 신 동력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신 동력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기술되어 있으며,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고부가식품산업이 있다.⁵⁶⁾

신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는 고부가식품산업에는 첫째, 친환경 안심식품으로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을 이용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둘째,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과 관련된 기술융합기반 기능성식품만 포함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화학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 질병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분야가 신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부가식품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 동력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동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세액공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현실적으로 농어민 개인이나 농·어업협동조합이 원천기술과 신 동력개발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조세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부족하였다. 일부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토의는 있었지만 조세측면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5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9조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 흡

1.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재 정부는 6대 전통·발효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을 중심으로 과학화, 산업화하여 한식의 세계화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세계화,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수농산물 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제도⁵⁸⁾가 있지만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인증 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⁵⁹⁾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에 규정되어 있지만 농·어업 식품의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지역별 농어촌센터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식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도 필수적이지만 연구개발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연구개발

58)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한국인증연구원 사이트 참조)

59)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업별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FTA가 실시됨에 따라 농수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업분야와 다른 분야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어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미흡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다.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⁶⁰⁾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⁶¹⁾이 되어야 하

6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농업 및 어업 관련 창업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구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데 현실적으로 농·어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투자처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3절 FTA⁶²⁾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FTA 협상을 통한 한국 농·어업 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으며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정착⁶³⁾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세법에서 별도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항목은 없다. 그러므로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결정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전문개정 2007.8.3]

62)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010년 7월 1일 현재 FTA 협상 타결국가는 미국과 EU이며, 협상진행중인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페루,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캐나다, 아랍 GCC(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UAE, 바레인)이다.(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참조)

63)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그 이유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참조)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원산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발생원천별로 발생비용을 수집·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막걸리의 경우 중국, 미국 등에서 쌀을 저가로 수입하고도 국내 원산지 가격표시의 정착에 의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후 무관세로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2. 국내 농수산물 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FTA에 따른 우리 농수산물 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에게 우리 먹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과 외국의 먹거리 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ISO 22000(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과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관련된 세제지원과 우리 농수산물 식품의 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업 및 어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해외 법인세 등을 부담하고 국내 법인세 계산시 해외 소득과 국내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등을 산출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받

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어업권 등 농수산 자원의 개발투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현재는 농수산물의 해외 자원 개발 확보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개도국 농업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개도국 농업전문가를 국내에서 교육훈련 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외 농수산 식품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2. 국내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제도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미흡

잉여 농수산물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 가구의 소

득 증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먹거리의 자급자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잉여 쌀의 소비를 위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잉여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화시킬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의 2/102(음식점업은 3/103)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⁶⁴⁾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과세 대상재화를 구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취득원가를 구성함으로써 누적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잉여 농수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잉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례규정 미흡

국내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등을 거쳐 제품화할 경우 사용되는 설비자산 및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농수산물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의 세법 규정 내에서 특별히 농수산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⁶⁵⁾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

64) 102분의 2는 1.96%, 103분의 3은 2.91%, 106분의 6은 5.66%, 108분의 8은 7.40%의 매입세액공제 효과가 있지만 농·어업 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동 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동 시

하여 유형고정자산을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의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자산의 비용화가 조기에 가능하다.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감가상각비 특례가 적용되는 예는 없다.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의 조세특례규정이 미흡하다.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미흡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대

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근거가 된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자와 세관장이다.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 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행규칙 제14조의 2(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각 1부씩 작성하여 공급자 보관용은 자신이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발급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연월일

(3)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2011년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도입 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현재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을 납세자 측면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 전달 및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 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나. 영세한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증대

농업법인(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포함)과 어업법인(어업협동조합, 어촌계 포함)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 사이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임대운영사업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또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e세로」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공인인증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서 필요하다.

「e세로」의 회원가입 절차,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를 보면 노령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 농업·어업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 스스로 전자적 접근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위해서 추가인력 및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나 매출액이 적은 농업·어업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기준금액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기준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비록 법인사업자이지만 농·어업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아래 <표 5-1>의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지 않고 금액이 낮을 경우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익과 비용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표 5-1>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의무대상 기준금액

업 종	기준금액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항 및 ③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시규정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1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영세 농·어업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따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 기한을 연장하든지 건당 공제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2. 유류비 면세 범위에 대한 세제지원의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제6장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

제1절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녹색성장 확충과 관련된 분야에 포함이 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참조)를 받을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 분야의 범 위확대

원천기술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에서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 공정, RFID-USN, U-컴퓨팅,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농·어업 분야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분야를 추가하여 녹색성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에 추가함으로써 농·어업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를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및 현재의 에너지와 혼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자원 분야

다음과 같은 농·어업 자원을 보존 및 개량화시키는 기술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기능성 품종개발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현재의 생산량 및 효율성이 기존의 품종보다 20%이상 증가될 경우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우리 농산물 중 기초 식량에 해당되는 우수한 쌀, 밀, 잡곡 등의 유전자
- ② 동식물의 우량 유전자
- ③ 양식이 가능한 어패류의 유전자

다. 청정기반 분야

다음과 같은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충 및 위해 박테리아의 천적을 개발하여 대량사육의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기술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벼농사 등 농사와 관련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 ② 양식업에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라.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분야

현재는 에너지관리와 공급망 관리에 한정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FTA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이력관리(입하, 재배, 출하시기 등)가 필수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이력관리와 관련된 RFID 기술도 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LED(발광다이오드)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SW(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식품산업 및 고도물처리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수산자원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이 많아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전기구동 방식 자동차와 클린 디젤자동차만 신 성장동력 분야에 해당되고 있지만, 다음의 항목도 신 성장동력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농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가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 ② 어선의 엔진에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바이오의약품, 첨단의료기기분야만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어업분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농·어업 자원을 통한 농·어업 자원 자체의 질병치료와 농·어업 자원을 통한 인간의 질병치료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① 병충해, 동식물·어장에 대한 병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 ②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인간 위해물질에 대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청정석탄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만 포함되어 있다. 추가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친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추가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 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②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 축산 분뇨 등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등

라.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의 범위 확대

현재는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에 친환경안심식품과 기능성 식품만 포함되어 있지만 6대 전통·발효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을 중심으로 과학화, 산업화하여 한식의 세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우리의 고유한 발효기술 및 염장기술을 이용한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발효기술과 염장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맛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암 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① 발효기술

- 반찬으로 이용될 수 있는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사용되는 발효기술의 개발

② 염장기술

- 내륙지방에 발달된 염장기술을 이용한 고부가식품 개발

③ 친환경식품 기술

-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양념을 만들 수 있는 기술

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세액감면 확대

농·어업 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동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연구단지에 입주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준용하는 안이다. 즉,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 등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나.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의 세액감면 요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의 요건은 비현실적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녀 교육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및 인구의

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2절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우리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미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화를 위한 품질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가. 세제지원 규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우리의 농수산 식품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금액의 100분의7에 상당하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다만, 투자의 범위에 토지는 제외된다.

나. 세제혜택의 요건

세계화를 위한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결과 해당 농수산 식품의 수출이 일정부분 발생되어야 한다.

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이

다. 우리 농수산물식품에 젊은 인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 시 전담 연구인력 조정

세계화를 위한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구소 설립의 요건 중 전담연구 인력의 구성비를 국내와 국외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담 연구인력 중 50% 이상은 현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당 음식점을 영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특정음식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우리 고유 음식점을 통해서 세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1)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⁶⁶⁾ 특히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66)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1(전문인력) 참조

- ① 농·어업 분야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② 농·어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투자처 범위의 확대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면 투자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벤처자금의 투자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농수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로부터 벤처창업자금을 출자 받을 경우에도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처의 범위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3절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가격표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가.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필요성

FTA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에 원산지 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구매, 부착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 지출을 발생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원산지 가격표시 부착과 관련된 비용

은 해당 제품(상품)이 판매될 때 비용화되지만 조기에 비용(손금)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준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사업 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의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설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일체에 대해서도 발생시점에 손금산입 할 필요가 있다.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국내의 종자 및 치어를 개량화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종자 및 치어 등을 해외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화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구원 총수를 10인 이상 요건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몇몇의 전문가가 종자나 치어를 개량하는데 참여해도 제조업과 달리 연구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식품분야를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중 다음의 연구원 총수 10인 이상을 연구원 총수 5인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

가 있다.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나.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우리 먹거리(비빔밥, 발효식품, 염장식품, 냉면 등)를 해외 현지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업 관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15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2.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를 준용하여 어업권의 확대 및 개발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5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1.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 확대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⁶⁷⁾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과 면세농산물 등을 적게 사용하는 업종 간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구 분	현 행	개선안
음식점업	106분의 6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8분의 8
음식점업 이외 업종	102분의 2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6분의 6

6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즉, 제조원가 중 원재료비가 50% 이상 차지할 경우 위와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제조과정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많이 이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지원 함으로써 국내 잉여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특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의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자산의 비용화가 조기에 가능하다.

제6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하여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법인사업자

이지만 농·어업법인의 경우 영세한 법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납세협력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어업 개인사업자는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 분	현 행	개선방안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2. 농·어업 관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영국과 같이 농어민 등이 직접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최근 정부는 FTA의 확대 등에 대응하면서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확충, 우리 먹거리의 세계화, FTA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보다는 법인의 형태를 갖춘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어민 중심의 조세지원 제도 보다는 법인 중심의 조세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농·어업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농·어업과 관련된 법률 및 참고문헌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와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관련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외국의 농·어업법인 관련 주요 조세제도를 검토한 후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여섯 가지(녹색성장 지원정책, 세계화 지원정책, FTA 대응 지원정책, 자원개발 및 확보 지원정책, 농수산물 가공처리 및 유통 지원정책)로 나누어 각 지원정책별로 농·어업법인 입장에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현행 농·어업법인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원천기술 및 신 동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에 기술되어 있으며, 금속, 생산기반(임계 성능 생산기반, 그린 에너지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 전력, 원자력, 지식정보보안, 청정기반, 화학공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computing, 화합물의약품, 우주,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분야가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 조세제도에 의하면 원천기술 분야에 농수산 분야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재 신 성장동력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기술되어 있으며,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고부가식품산업이 있다. 신 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는 고부가식품산업에는 친환경 안심식품으로 비가열 전처리 (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을 이용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과 관련된 기술융합기반 기능성식품만 포함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화학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 질병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신 성장동력의 범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 별표7의 내용은 너무 일부분의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다. 조세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부족하였다. 일부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 형식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토의는 있었지만 조세측면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수농산물 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제도는 있지만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인증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현재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에 규정되어 있지만 농·어업 식품의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지역별 농어촌센터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위에서 식품의 표준화와 규격화도 필수적이지만 연구개발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업별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FTA가 실시됨에 따라 농수산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

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업분야와 다른 분야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지만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농·어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

셋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TA 협상을 통한 한국 농·어업 시장은 개방될 수 밖에 없으며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정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재 세법에서 별도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항목은 없다. 농수산물 원산지 가격결정을 위한 회계제도 시스템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 원산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발생원천별로 발생비용을 수집·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FTA에 따른 우리 농수산 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자에게 우리 먹거리는 안전하다는 인식과 외국의 먹거리 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ISO 22000(식품안전 경영시스템 인증)과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와 관련된 세제지원과 우리 농수산 식품의 브랜드를 세계화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농수산물 자원의 확보 및 개발을 위해서는 해외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어업권 등 농수산 자원의 개발투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현재는 농수산물의 해외 자원 개발 확보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다섯째,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잉여 농수산물 사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의 2/102(음식점업은 3/103)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과세 대상재화를 구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취득원가를 구성함으로써 누적효과가 발생된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잉여 농수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국내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등을 거쳐 제품화할 경우 사용되는 설비 자산 및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농수산물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재의 세법 규정 내에서 특별히 농수산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의 조세특례규정이 미흡하다.

여섯째,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가 미흡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현재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을 납세자 측면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 전달 및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 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국세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e세로」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e세로」의 회원가입 절차,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 절차, 발행·수취내역 조회 절차를 보면 노령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본다.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 스스로 전자적 접근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을 위해서 추가 인력 및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나 매출액이 낮은 농업·어업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 농·어업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에 농·어업 분야와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 분야를 추가하였다. 즉,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를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및 현재

의 에너지와 혼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농산물 중 기초 식량에 해당되는 우수한 쌀, 밀, 잡곡 등의 유전자, 동식물의 우량 유전자, 양식이 가능한 어패류의 유전자 등을 이용하여 농·어업 자원을 보존 및 개량화시키는 기술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기능성 품종개발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현재의 생산량 및 효율성이 기존의 품종보다 20%이상 증가될 경우 원천기술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벼농사 등 농사와 관련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양식업에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충 및 위해 박테리아의 천적을 개발하여 대량사육의 상용화를 지원해 주는 기술을 원천기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에너지관리와 공급망 관리에 한정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FTA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이력관리(입하, 재배, 출하시기 등)가 필수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이력관리와 관련된 RFID 기술도 원천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를 위해서 농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가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어선의 엔진에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도 신 성장동력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바이오의약품, 첨단의료기기분야만을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어업분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농·어업 자원을 통한 농·어업 자원 자체의 질병치료와 농·어업 자원을 통한 인간의 질병치료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충해, 동식물·어장에 대한 병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인간 위해물질에 대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신 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축산 분뇨 등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등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고부가식품산업 분야에 친환경안심식품과 기능성 식품만 포함되어 있지만 6대 전통·발효 식품(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류, 천일염)을 중심으로 과학화, 산업화하여 한식의 세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발효기술, 염장기술 및 친환경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맛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암 예방 등을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고부가식품산업의 분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농·어업 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동 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준용하는 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의 세액감면 요건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의 요건은 비현실적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녀 교육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및 신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및 인구의 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둘째,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미각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화를 위한 품질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입맛에 맞는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우리의 농수산 식품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면 될 것이다. 세제혜택 요건으로 해당 농수산 식품의 수출이 일정부분 발생되어야 한다.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우리 농수산식품에 젊은 인력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인 창업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화를 위한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의 경우에는 현재의 연구소 설립의 요건 중 전담연구인력의 구성비를 국내와 국외 연구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담 연구인력 중 50% 이상은 현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당 음식점을 영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특정음식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우리 고유 음식점을 통해서 세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농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범위를 농·어업 분야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농·어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면 투자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벤처자금의 투자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농수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로부터 벤처창업자금을 출자받을 경우에도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처의 범위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하는 것이다. FTA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에 원산지 가격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산지 가격표시의 구매, 부착 및 관리와 관련된 일체 지출을 발생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원산지 가격표시 부착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제품(상품)이 판매될 때 비용화되지만 조기에 비용(손금)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사업 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의 내용연수가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설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구원 총수를 10인 이상 요건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몇몇의 전문가가 종자나 치어 등을 개량하는데 참여해도 제조업과 달리 연구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농수산식품분야를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중 연구원 총수 10인 이상을 연구원 총수 5인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먹거리(비빔밥, 발효식품, 염장식품, 냉면 등)를 해외 현지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먹거리를 세계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는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그러나, 해외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 및 어업관련 해외자원개발(농지개발권, 어업권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농·어업 관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 15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세제혜택으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어장의 개발 및 확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내 농지 및 어업권의 확대에 따른 조세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를 준용하여 어업권의 확대 및 개발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 확대를 위해서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음식점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 음식점업 이외의 업종일 경우 102분의 2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많이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잉여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규정 신설하는 것이다.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의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면 취득자산의 비용화가 조기에 가능하다.

여섯째,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법인사업자이지만 농·어업법인의 경우 영세한 법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납세협력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농·어업 개인사업자는 기준금액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영세 농·어업 법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 관련 유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고 있다. 이 때 농어민이 유통시장에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영국과 같이 농어민 등이 직접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어업법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지원제도를 모색함으로써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농수산물을 통한 녹색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농수산물이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농수산물의 세계화를 통해서 농수산 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농·어업 분야의 신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계속 확대되고 있는 FTA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 가격표시제를 정착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될 것이며, 농수산물의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의 조세지원정책을 통해서

잉여 농수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농수산물의 유통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종사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조세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내용은 유관 기관에 정책보고서로 건의할 수 있으며, 우리 농수산물을 단순한 먹거리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 법인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의 범위가 농·어업 법인 중심의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한정됨으로서 농어민 개인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는 기술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안할 경우 국가 세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종면·김승래·손원익·송호신·이명현, 2008, “무역자유화(FTA) 확대에 따른
조세 및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 김정호·김태곤·조성열,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정책연구보고.
- 김태곤, 2003, “농업·농촌의 지속속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 김태윤, 2010, “한국 농식품산업의 세계화 : 가능성과 정책과제”, 한국농업의
세계화를 위한 워크샵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분야별 현황조사』. 2009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atis.rda.go.kr>)
- 박문호·전익수,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연구”,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 서희열·정규언, 2006.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학연
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07, "수산업·어촌을 위한 새로운 활
료"
- 양병우, 2001, “기업농의 성격과 유현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1(1)
- 양종관, 2006, “한국 조세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농업부
분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 _____, 2005, “농업환경변화와 조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추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현석, 2007, “농·어업용 면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 이종성, 2006, "농·어업부문조세감면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에서 어업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
구원
- 이종성, 2007, "어촌계의 세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AAFC), 2003,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 (CAIS) Program Handbook.

Fargher, Ben, 2002, "Farm Polic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n Austrian Observation", Winston Churchill Memorial Trust.

Hennessy, David, 1998, "the Production Effects of Agricultural Income Support Policies under Uncertaint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

Ran Tao, Justin Yifu Lin, Mingxing Liu and Qi Zhang, 2004, "Rural tax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in China",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31, Issues2-3, Pages 161-168

Mahmood Hasan Khan, 2001, "agricultural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of issues and policy",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24, Issue 3, Pages 315-328

Darren Hudson and Don ethridge, 1999, "export taxes and sectoral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otton and yarn markets in Pakistan",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20, Issue 3, Pages 263-276

Timothy J. Dalton and william A. Masters 1998, Pasture taxes and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in southern Mali, Agricultural Economics, Volume 19, Issues 1-2, Pages 27-32

Jussi Lankoski and Markku Ollikainen, 2003, "Agri-environmental externalities : a framework for designing targeted policies", Eur. Rev. Agric.Econ, 30 : 51-75

Alex Winter-nelson, 1997, "Rural taxation in Ethiopia, 1981-1989: a policy analysis matrix assessment for net producers and net consumers", Food Policy, Volume 22, Issue5, Pages 419-431

US Internal Revenue Service, 2005, Publication 225. Farmer's Tax Guide

별첨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 별표8

[별표 7] <신설 2010.2.18>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분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1.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응용	가. 에코 LED	(1)고효율 RGB LED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2)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3)대용량 LED 양산장비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불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나. LED 스마트 모듈	건설용 LED조명 모듈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구로서 인간 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콘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조명기구 제조기술
	다. LED 감성/웰빙 조명	백색 LED 웰빙 조명기기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로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이상의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2) 고효율 충전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RGBY(Red·Green·Blue·Yellow) LED 등을 이용하여 충전연색의 빛을 만들어 내며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광원모듈 기술
2. 그린수	그린카	(1)전기 구동방식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송시스템		자동차	Vehicle), PHEV(Plug-in Hybrid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3. 로봇 응용	가.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차세대 에너지/정보소자 제조 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플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플레이션 기술
		나.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1)감시·경계 로봇시스템
		(2)재난방재 로봇시스템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험지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라이프케어 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라. 에듀테인먼트 로봇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4. 바이오 제약의료기기	가. 바이오의약품	(1)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전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안정성을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2)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목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제거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증대시키는 기술
		(3)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일반세포(연골세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 및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통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술
	(4)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나. 첨단 의료기기	(1)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2)첨단영상 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5. 신소재 나노융합	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나.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 배향, 접합 등을 통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블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6. 신재생 에너지	가. 태양전지	(1)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2)연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개발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다. 청정석탄에너지	석탄 가스화기 및 가스 합성기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제조기술[저급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 ₂)와 일산화탄소(CO)로 구성된 합성가스 제조]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라. 폐기물 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7. 콘텐츠-SW(소프트웨어)	가.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	(1)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의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기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2)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나. 지능형 인터페이스	(1)음성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2)다국어 언어처리 소프트웨어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8. 탄소저감에너지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포집저장)	(1)연소배가스 CO ₂ (이산화탄소) 분리플랜트	연소후 CO ₂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석탄가스화 CO ₂ 분리플랜트	연소전 CO ₂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순산소연소 CO ₂ 분리플랜트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CO ₂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

			<p>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p> <p>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p>
9. 고부가 식품산업	가. 친환경 안심식품	식품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 기술
	나. 기능성 식품	기술융합기반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10. 고도물 처리산업	상수관리 최적화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별표 8] <신설 2010.2.1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1. 금속	가. Smart Metal (스마트 금속)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생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나. Green Process (친환경 공정)	<p>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뮴(Cd) 등을 비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p> <p>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합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넥스(FINEX)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p>

		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다. Energy Metal (에너지 금속)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Mn)계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마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금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모용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2. 생산 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기반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과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나. 그린에너지 생산기반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4. 에너지 효율향상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

		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여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오일셀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셀,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질화시키는 기술
	나. 청정합성연료 GTL(Gas-to-Liquid, 가스액화정제) 공정시스템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을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방법으로 생산 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 [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처리·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7. 전력	가. 지능형 전력계통 (Smart Grid)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나. 지능형 배전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 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기술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

		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라. 신형원전 (Advanced Power Reactor)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 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마. 가압경수형 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9. 지식정보 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10. 청정 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사이클성(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나. 그린프린팅 제품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정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력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 ₂)를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원료 또는 중간체 등

		<p>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을 개선 및 용매분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p> <p>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을 극대화하는 기술</p> <p>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₂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p>
	나. 인간친화성 소재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제어기술
1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가. Smart(지능형) 에너지관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나. Smart(지능형) Supply Chain(공급망 관리)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13. U-컴퓨팅 (Ubiquitous Computing, 유비쿼터스 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
14. 화합물 의약품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15. 우주	인공위성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체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중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16. 디스플레이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용 소재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형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um(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턴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 ₂) 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18. 조선	고부가가치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 제조 기술

별첨2: 농·어업 법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요약표

분류		현행 규정	개정안	비고(추진단계)
지원분야	세부항목			
I. 녹색성장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관련 원천기술 개발분야의 범위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첨1 참조)	<p>현행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에 다음 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효율 향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자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자원을 보존 및 개량화시키는 기술과 유전자 조작을 통한 기능성 품종개발(예 : ① 우리 농산물 중 기초 식량에 해당되는 우수한 쌀, 밀, 잡곡 등의 유전자, ② 동식물의 우량유전자, ③ 양식이 가능한 어패류의 유전자) 청정기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충 및 위해 박테리아의 천적을 개발하여 대량 사육의 상용화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중점시책인 만큼 추진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p>지원해 주는 기술(예 : ① 벼농사 등 농사와 관련하여 병충해를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② 양식업에서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ID-USN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이력관리와 관련된 RFID 기술 	
	<p>2.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범위 확대</p>	<p>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첨1 참조)</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다음 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가 전기구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 어선의 엔진에 전기구동방식을 이용할 경우 •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 동식물·어장에 대한 병균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등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인간 위해 물질에 대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시책인 만큼 추진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축산분뇨 등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및 저장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식품산업분야 - 발효기술(반찬을 이용될 수 있는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사용되는 발효기술의 개발) - 염장기술(내륙지방에 발달된 염장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식품개발) - 친환경식품기술(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양념을 만들 수 있는 기술) 	
	<p>3. 원천기술 및 신 성장 동력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지원</p>	<p>현행 규정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감면 확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준용 (해당 연구단지에 입주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분의 50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시책인 만큼 추진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를 준용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3년간 법인세 등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1조의 세액감면 요건 중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의 요건은 비현실적(우수한 인재의 수도권 거주를 감안)이므로 삭제 	
II. 농수산 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조세 지원	1.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 농수산 식품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추가 -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이루어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2단계(중기)로 하여 시설투자부분을 면밀히 검토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p>부분으로 한정</p>	
	<p>2.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대상 업종에서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인력 중 2명 이상 필요,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필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지원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 연구소 설립시 전담연구인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연구인력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차이즈형태의 우리 고유 음식점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제외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의 범위확대 (① 농·어업 분야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 농·어업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투자처 범위의 확대 <p>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한 투자처를 다양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로부터 벤처창업자금을 출자 받을 경우에도 벤처기업 요건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창업을 위하여 추진 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Ⅲ.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	1. 원산지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신설	현행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원산지 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발생시점에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가격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 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여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우리 농수산물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현행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 요건 확대 : 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가운데 연구원 총수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개정 •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제도 도입 - 우리 먹거리(비빔밥, 발효식품, 염장식품, 냉면 등)를 현지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준비금 설정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브랜드화 정도와 현행 실행 정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산업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2단계(중기)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농수산물의 자원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1.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광업권과 조광권에 대해서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를 농지개발권과 어업권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점시책인 만큼 추진단계를 1단계(단기)로 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2. 업종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한 어업권 관련 감면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의 농지확대개발에 대한 세액 감면 - 개간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간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3조에 어업권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간 중립성을 유지하는 제한이므로 추진단계는 1단계(단기)로 바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V. 국내 농수산 식품의 가공처리에 대한 조세지원	1.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음식점업 106분의6(개인사업108분의8) - 음식점 이외 102분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업 : 원재료 중 면세농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108분의 8 • 음식점 이외 : 원재료 중 면세농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106분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등 외국농수산물과의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추진단계를 3단계(장기)로 하는 검토 및 추진 필요
	2. 농수산물 가공처리 설비자산에 대한 손금산입과세특례규정 신설	현행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의 가공기술 및 최신설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단계는 1단계(단기)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VI. 국내 농수산 식품의 유통 판매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법인이 발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추진단계는 1단계(단기)로 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역발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 관련 유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제도의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항에서는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만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이 직접 유통시장에 운반하는 경우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유통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추진단계는 2단계(중기)로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